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가 2005년 개관당시 책정된 후 변동되지 않아 적정한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함
- 나.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없어진 시설·기능 삭제 등

2. 주요내용

- 가.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(안 별표 1)
- 나. 현재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시설·기능 삭제(안 제3조, 제4조 및 별표 1)
- 1) 주간보호실, 재가봉사사업 삭제
- 다.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삭제 및 법령상 용어변경 반영(안 제7조)
- 1) 정신적 장애인의 이용제한 규정 삭제
- 2) ‘전염병’을 ‘감염병’으로 용어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
- 2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- 3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산책로”를 “산책길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물리치료실, 체력단련실

8. 취업알선센터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직업훈련교육, 공동작업실 운영”을 “직업훈련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이상의 자로”를 “이상인 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감염병 환자

제7조제2호 중 “되는 자”를 “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용하는 자”를 “이용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(1개월)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(제8조제1항 관련)

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
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300원
찜 질 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제2조(위치) 회관은 구미시 산책 로 51에 둔다.	제2조(위치) ----- 산책 길 -----.
제3조(시설) 회관에는 다음 각호 의 시설을 둔다.	제3조(시설) ----- 각 호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주간보호실, 물리치료실, 체 력단련실	2. 물리치료실, 체력단련실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공동작업장, 취업알선센터	8. 취업알선센터
9. · 10. (생략)	9. · 10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업무 및 기능)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4조(업무 및 기능) ----- ----- 각 호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노인취업알선 : 취업상담알 선, 직업훈련교육, 공동작업실 운영	2. ----- -- 직업훈련교육
3. 재가봉사사업 : 가정봉사원 파견사업, 주간보호실 운영	<삭 제>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회관 이용 대상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 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	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이상

상의 자로 한다.

② 회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
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호의
규정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
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 략)

제7조(이용의 제한) 시장은 다음
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
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
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
이 있는 자

2.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
저해 등 회관 운영유지에 지
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

3.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
용하는 자

인 사람으로 -.

② -----
----- 각 호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이용의 제한) -----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-----
-----.

1. 감염병 환자

2. -----

----- 되는 사람

3. ----- 의
용하는 사람

별표 신규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1]		■ 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1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(제8조제1항관련)		노인종합복지회관 부대시설 이용요금(제8조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시설종류</th><th>이용대상</th><th>이용료산출</th><th>이용료</th></tr><tr><td>주간보호센터</td><td>- 일반(경증 치매,허약 노인)</td><td>1월</td><td>100,000원 이내</td></tr><tr><td>경로 식당</td><td>- 회원 및 일반노인</td><td>1식</td><td>2,000원 이내</td></tr><tr><td>찜질방</td><td>- 회원 및 일반노인</td><td>1회</td><td>1,000원 이내</td></tr></table>		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	주간보호센터	- 일반(경증 치매,허약 노인)	1월	100,000원 이내	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000원 이내	찜질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 이내	<table><tr><th>시설종류</th><th>이용대상</th><th>이용료산출</th><th>이용료</th></tr><tr><td>경로 식당</td><td>- 회원 및 일반노인</td><td>1식</td><td>2,300원</td></tr><tr><td>찜질방</td><td>- 회원 및 일반노인</td><td>1회</td><td>1,000원</td></tr></table>			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	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300원	찜질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
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간보호센터	- 일반(경증 치매,허약 노인)	1월	100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찜질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설종류	이용대상	이용료산출	이용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로 식당	- 회원 및 일반노인	1식	2,3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찜질방	- 회원 및 일반노인	1회	1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은 무료		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무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 <개정 2012.3.21>

② ~ ③ 생략

□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7조(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)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, 홍보 등 필요한 법적·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도로명주소법」

제19조(도로명주소 등의 효력)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. <단서 생략>

② ~ ④ 생략

[전문개정 2011.8.4]

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0. 1.18, 2013.3.22]

1. "감염병"이란 제1군감염병, 제2군감염병, 제3군감염병, 제4군감염병, 제5군감염병, 지정감염병,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, 생물테러감염병, 성매개감염병,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.

2. ~ 12. 생략

13. "감염병환자"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.

14. ~ 19. 생략